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大對盧

윤성환*

1. 머리말
2. 고구려 후기 ‘大人’의 研究史的 검토
3.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대대로
 - 가. 고구려 후기 대인의 史料的 특징
 - 나.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 : 관등으로서의 대대로
4. 大人會議와 대대로
5. 맺음말

1. 머리말

고구려 후기의 官制에서 最高官은 大對盧였다. 대대로는 제1위의 官等이자 국사를 총괄하는 3년 임기의 官職으로서 귀족 간 力學에 의해 선임되었던 것으로 전한다.¹⁾ 이러한 대대로의 독특한 양상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지만, 대대로 자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는 영세하기 그지없는 사료적 조건도 작용

* 성균관대학교 학사

1) 『翰苑』蕃夷部 高麗; 『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莫離支의 실체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 후기 정치사를 이해하려 할 때 대대로에 대한 충분한 규명 작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대대로는 그 자체 고구려 후기 정치제도 운영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점은 대대로의 선임 방법 및 대대로가 관등과 관직의 복합적 성격을 지닌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확보하려면 우선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었던 존재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翰苑』 高麗記에는 제1위의 대대로에서 제5위의 皂衣頭大兄(=位頭大兄)에 이르는 상위 다섯 관등에 해당하는 관인들이 인재를 뽑아 관작을 수여했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를 중시할 경우 대대로 역시 상위 5관등을 보유한 官人이 취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정은 당시 관등(관위)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에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었던 관등으로 제2위의 太대兄을 지목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막리지가 제2위인 태대형의 異稱이었음을 논증한 다음, 각종 문헌기록과 금석문에서 대대로와 막리지가 혼동되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해 막리지와 대대로가 상호 ‘昇降 관계’에 있었다고 해석하였다.²⁾ 이에 반해 막리지를 중리태대형에 비정한 연구에서는, 관등제의 속성에 유의할 때 대대로와 태대형 사이에 昇降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었던 존재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된 상태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상의 견해는 막리지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⁴⁾ 제기된 탓에 대대로 자체에 역점을

2) 임기환, 「6~7세기 정치 세력의 동향과 귀족연립체제」,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287~298쪽.

3) 이문기,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的 性格과 機能」, 『백산학보』 55, 2000, 71쪽.

두고 살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막리지(혹은 태대형)와 대대로의 관계’ 차원의 범주에서 접근한 한계를 지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 후기 대대로에 도전·취임할 수 있었던 존재는 좀 더 방법을 달리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현전자료상 대대로와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대인’이 주목된다. 비록 단 한 건의 사례이지만, 淵蓋蘇文의 부친인 淵太祚는 “東部大人 大對盧”를 역임했다고 전하는 바, 이에서 대인과 대대로 간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상 ‘대인’이 고구려 후기 독점적 권력을 누렸던 연개소문 일가와 관련해 한정적으로만 출현하는 점 역시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와 더불어 대인과 대대로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대대로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얻어 보려 한다. 우선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를 확인해나가는 일환으로서, 대인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2. 고구려 후기 ‘大人’의 研究史的 검토

그동안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는, 642년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지위와 관련해 주로 논의되었던바, 그것은 대개 두 갈래로 진행

4) 한편, 현재 북한학계는 高麗記의 대대로 관련 기록을 複數의 대대로끼리 싸워 취임했다는 의미로 수용하여 이를 기록상의 모순으로 규정하고—국정을 총괄했던 대대로는 1인일 수밖에 없었으므로—중국인들이 고구려 귀족들의 限時的 권력투쟁을 恒久的인 것으로 오해하여 남긴 기록으로 보고 있다(『조선단대사』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49쪽). 이는 북한학계가 강력한 왕권체제를 先進的 체제로 인식하고, 고구려 국가체제를 봉건적 중앙집권체제로 前提한 데서(손영중,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55~57쪽) 비롯한 주장이지만, 한편으로 고려기의 해당 기록이 지닌 모호성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다.

되었다. 우선 대인의 실체를 고구려 초기 ‘大加’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유력 귀족가문의 세력기반 및 사회적 지위(신분)와 연관해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우 대인은 유력귀족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던 칭호나 신분으로 비정된다.⁵⁾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대인을 承襲하려 하자 여타 귀족들이 반대했던 사실을⁶⁾ 이해하기 어려운 난점이 따른다. 이는 대인이 일정한 공적 역할과 위상을 지녔거나 혹은 그것을 보장했기에 나타난 ‘정치적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대인의 語義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고구려 후기의 대인은 귀족세력 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만큼 참여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대인의 성격이 단순히 ‘사회적 지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와 달리 그것의 정치적 위상과 “동부대인”의 용례에서 드러나는 ‘部’와 ‘대인’의 연관성에 유의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 경우 대인을 ‘부의 대표자’로 이해하거나⁷⁾ 부를 관장하던 특정 관직, 즉 ‘禰薩’에 비정하였다.⁸⁾ 이 중 대인이 부의 대표자라는 전자의 견해는, 이 시기 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따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후기의 5부는 王都의 행정구역으로 이해되고 있는바⁹⁾ 그렇다면 대인이 부의 무엇을 대표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타인지 이 견해에서는 고구려 후기에 이르러 귀족세력이 부를

5) 전미희, 「淵蓋蘇文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1994, 270쪽;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하, 을유문화사, 1996, 477쪽; 전순옥, 「淵蓋蘇文 執權期の 莫離支體制 研究」, 『백산학보』 46, 1996, 65쪽.

6)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有蓋蘇文者, … 父爲東部大人對盧死, 蓋蘇文當嗣, 國人惡之, 不得立, 頓首謝衆, 請攝職, 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嗣位.”

7) 정원주,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고구려발해연구』 40, 2011, 31~32쪽.

8) 노태돈, 「귀족연립정권과 연개소문의 정변」,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이문기, 「7세기 高句麗의 軍事編制와 運用」, 『고구려연구』 27, 2007.

9) 김현숙, 「6~7세기의 영역 지배 방식」,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최희수,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의 구조와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32, 2008.

단위로 새롭게 결집함으로써 5부가 다시 정치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추론을 전제하고 있다.¹⁰⁾ 그러나 「泉男生墓誌銘」, 「高慈墓誌銘」 등 각종 금석문 자료와 정변 전 연개소문의 행적 관련 자료가 말해주듯 6~7세기 고구려 귀족들은 가문단위로 분화되어 있었고, 그러한 개별 가문의 경제적 기반(食邑)과 정치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원』에서 “5부는 모두 貴人之族”이라 기록한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이 시기 귀족들의 존재양태(=“族”)를 잘 보여준다. 심지어 귀족가문 一族 내에서도 정치권력 혹은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연개소문이 642년 쿠데타 과정에서 자신의 일족을 죽인 사실은 이를 말해준다.¹¹⁾ 이처럼 이 시기 고구려 귀족의 존재양태는 혈연집단을 의미하는 ‘族’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고¹²⁾ 5부는 그러한 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을 뿐, 그 자체 각 귀족가문 간의 연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인을 육살에 비정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의 성격(=왕도의 행정구역)에 유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東部大人을 ‘攝職’한 사실을 중요시 여겨 대인을 관직으로 보는 방향을 잡은 다음, 이 시기 부의 기본성격을 고려해 동부대인을 ‘동부를 관장하는 長’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그런 뒤 부를 관장하던 관직인 육살에 대인을 비정하였다. 육살은 일명 軍主라고 불린 것이 중국 측 자료에 전하며, 이에 5부 육살은 각각 개별 부의 병력을 통솔한 것이 인정되므로, 연개소문이 정변 당시 部兵을 동원한 정황을 고려해볼 때 그렇게 비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정원주, 앞의 논문, 2011.

11) 『日本書紀』卷24 皇極紀 元年 2月.

12) 여호규, 「3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과 통치체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15, 1995, 167쪽.

이러한 접근은 일견 합리적인 접근방향이라 생각되지만, 대인을 관직인 육살에 비정하더라도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 고구려 후기의 父職 承襲은 ‘관직’이 아닌 ‘관등’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을¹³⁾ 고려할 때 그러하다. 실로 관등제의 본질적 속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당시 특정 귀족(가문)의 위상은 관직이 아닌 관등이 담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견해에서는 『新唐書』 高麗傳에 전하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인 “東部大人 大對盧”를 「천남생묘지명」에 근거해 “동부대인 막리지”로 수정하여 추정하면서도, 정작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지위는 동부대인 = 동부육살에 비정하였다.¹⁴⁾ 왜냐하면 현전하는 국내외 기록에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지위는 모두 동부대인(혹은 서부대인)으로만 나타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볼 경우 정변 이전의 연개소문은 특정 관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동부육살이라는 관직만을 역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의 귀족들이 관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정계에서 활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인을 육살과 같은 특정 관직에 비정하는 견해 역시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3) 여호규, 「일원적 관등제의 정비와 그 구조」,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411~413쪽. 다만, 최근 알려진 「高欽德墓誌銘」에는 고희덕의 증조인 高瑗이 ‘建安州都督’, 즉 建安城 육살을 역임하였으며, 그것을 고희덕의 조부인 高懷가 세습하였다고 전한다.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취신할 경우 고구려 후기 부직 승습의 형태로서 관직을 세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같은 州級의 성이었던 책성의 도독을 역임한 高量의 관등이 위두대형이었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고원, 고회의 관등 역시 위두대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고회는 고원의 관등인 위두대형을 승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묘지명에서 관등은 기재하지 않은 채 건안주도독의 세습을 특기한 것은, 고량-高質 부자 사이에서 확인되듯 당시 동일한 관등(위두대형)을 세습하더라도 관직은 달리하는 경우(고량 : 책성도독/고질 : 대장군)가 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4) 노태돈, 앞의 책, 1999, 467~471쪽.

이상에서 고구려 후기 ‘대인’을 둘러싼 각종 견해들을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대인’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는 크게 볼 때 두 갈래였다. 하나는, 그것을 고구려 초기 ‘大加’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유력 귀족가문의 세력기반 및 사회적 지위와 연관해 보는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공적(정치적) 위상과 이 시기 部의 성격(행정구역)에 주목해 특정 관직에 비정하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두 시각 모두 일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禰薩說 역시 검토 결과 그대로 따를 수만은 없었다. 그렇다면 고구려 후기 ‘대인’의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혹 양자의 시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실체에 접근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3.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와 대대로

가. 고구려 후기 대인의 史料的 특징

고구려 후기 대인의 사료적 특징을 검토해보기에 앞서 대인의 用例를 살펴보자. 먼저 역대 중국 측 자료에서 찾아지는 대인의 용례는 워낙 많아 特定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체로 12가지의 의미로 정리되는 바, ① 지위가 높은 자나 王, 公, 貴族을 지칭하는 말, ② 관료사회에서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습관적 칭호, ③ 王者라는 말과 같은 말, ④ 궁궐 近侍에 대한 존칭, ⑤ 世家 豪族을 가리키는 말, ⑥ 덕행이 고상하고 뜻이 높고 깊은 사람, ⑦ 늙은이에 대한 경칭, ⑧ 부모, 叔伯 등 연장자에 대한 존칭, ⑨ 또래 중 나이나 이력이 약간 더 많은 사람에게 연락할 때 쓰는 말, ⑩ 成人을 가리키는

말, ① 체격이 큰 사람, ② 고대 북방부족 수령의 칭호 등이었다.¹⁵⁾ 이 중 고구려 후기 대인과 관련해 검토대상이 될 만한 용례로는 ①, ④, ⑤번을 선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日本書紀』 내에서 확인되는 大人の 의미를 정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대체로 ① 높은 사람, ② 지역 수장, ③ 훌륭한 사람, ④ 太子 정도의 반열에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 ⑤ 존귀한 자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고 한다.¹⁶⁾ 대체로 『일본서기』에서는 대인을 身分과 관련해 사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한국고대사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고구려의 경우 『三國志』 東夷傳에서 ‘涓奴部の 適統大人’과¹⁷⁾ ‘東沃沮 大人’이¹⁸⁾ 확인된다. 모두 고구려 초기의 상황과 관련되는 데, 전자의 경우 과거 소노부 출신 왕의 혈통을 받은 자가 왕의 宗族만이 칭할 수 있는 古雛加를 칭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서 이때의 ‘적통대인’은 바로 그러한 존재를 중국인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 채택한 용어일 뿐, 고구려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니다. 고구려에서는 그러한 존재를 ‘古雛加’라 불렀던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고구려 초기의 동옥저 지배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 동옥저의 ‘지배자’ 또는 ‘首長’을 가리킨다. 즉, 고구려는 ‘대인’으로 표기된 동옥저의 수장을 使者로 삼아 동옥저를 통치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때의 ‘대인’ 역시 고구려나 동옥저에서 수장을 가리켜 사용한 용어라기보다 기록자인 중국인이 선택한 용어라 볼 수 있다. 이로 보면 고구려 초기에는 ‘대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6세기 초반의 신라에서 ‘대인’이라는 존재가 확인된다. 524년 건립된 「蔚珍鳳坪新羅碑」에

15) 이상은 ‘漢典’(http://www.zdic.net)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16) 백승욱, 앞의 논문, 2006, 293~295쪽.

17) “王之宗族，其大加皆稱古雛加。涓奴部本國主，今雖不爲王，適統大人，得稱古雛加，亦得立宗廟，祠靈臺·社稷”(『三國志』卷30 魏書 第30 東夷 高句麗)

18) “國小，迫于大國之間，遂臣屬句麗。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使相主領”(『三國志』卷30 魏書 第30 東夷 東沃沮)

등장하는 “口(또는 處)事大人”이 그것이다. 이때의 “口(또는 處)事大人”은 일반적으로 관직이 미분화되고 관부가 설치되지 않은 시기의 산물로서 실무 집행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⁹⁾ 따라서 7세기 고구려의 ‘대인’과 그 성격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7세기 고구려의 경우 官府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관직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²⁰⁾ 단지 그것이 현전기록에 많이 남아 있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韓中日 고대 자료에 나타나는 대인의 용례와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7세기에 확인되는 고구려 後期の 대인은, 그 시기의 특징적 상황과 결부시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며²¹⁾ 실제로도 7세기 고구려의 ‘대인’은 지극히 특징적, 한정적으로 자료상에 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인’은 이 시기에만, 그리고 연태조·연개소문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만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대인의 실체 파악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로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에 전술한 대인 자체가 지닌 사전적 의미를 염두에 두며 고구려 후기 대인의 사료적 특징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다만 대인의 사료적 특징은 자료상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 및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와도 긴밀히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수반하게 될 것이다. 우선 대인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의 기록들이 전부다. 내용상 부분적인 중복이 있지만 원문을 모두 제시해

19) 후보돈, 「중앙통치조직」, 『한국사』 7 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172~173쪽 ; 윤진석,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새로운 해석과 신라부체제-울진 봉평리 신라비·포항 냉수리 신라비와의 비교검토-」, 『신라 최고의 금석문 포항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주류성, 2012, 92~97쪽.

20) 「高麗記」를 인용하고 있는 『翰苑』 蕃夷部 高麗 條에 7세기 고구려 관직의 일부가 확인된다.

21) 기존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즉 “대인의 성격은 그것이 쓰여진 시기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파악”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노태돈, 앞의 책, 1999, 469~470쪽).

보겠다.

① 西部大人蓋蘇文，攝職有犯，諸大臣與建武議欲誅之。事洩，蘇文乃悉召部兵，云將校閱，并盛陳酒饌於城南，諸大臣皆來臨視，蘇文勒兵盡殺之，死者百餘人。焚倉庫，因馳入王宮，殺建武，立建武弟大陽子藏爲王。自立爲莫離支，猶中國兵部尙書兼中書令職也。自是專國政。(『舊唐書』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② 有蓋蘇文者，或號蓋金，姓泉氏，自云生水中以惑衆。性忍暴。父爲東部大人，大對盧死，蓋蘇文當嗣，國人惡之，不得立，頓首謝衆，請攝職，有不可，雖廢無悔，衆哀之，遂嗣位。殘凶不道，諸大臣與建武議誅之，蓋蘇文覺，悉召諸部，給云大閱兵，列饌具請大臣臨視，賓至盡殺之，凡百餘人，馳入宮殺建武，殘其尸投諸溝。更立建武弟之子藏爲王，自爲莫離支，專國，猶唐兵部尙書兼中書令職云。(『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③ 營州都督張儉奏，高麗東部大人泉蓋蘇文，弑其王武。蓋蘇文凶暴多不法，其王及大臣議誅之。蓋蘇文密知之，悉集部兵若校閱者，并盛陳酒饌於城南，召諸大臣共臨視，勒兵盡殺之，死者百餘人。因馳入宮，手弑其王，斷爲數段，棄溝中，立王弟子藏爲王，自爲莫離支，其官如中國吏部兼兵部尙書也。(『資治通鑑』卷196 唐紀12 太宗 貞觀 16年 11月 丁巳)

④ 王命西部大人蓋蘇文，監長城之役。(『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5年 春正月)

이상의 네 자료에서 고구려 후기 대인과 관련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을 정리해보자. 첫째, 대인은 최소한 어떤 ‘공식적인(=정치적인) 지위’였다. 이 점은 자료③과 ④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642년(영류왕 25) 정월, 영류왕의 王命에서 연개소문을 ‘서부대인’이라 명기한 것은 이 시기 그의 지위가 서부대인이었음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변 직후인 642년 11월, 唐의 영주도독 장검 역시 당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에서 연개소문을 가리켜 ‘동부대인’이라 적시하였다. ‘서부’와 ‘동부’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정변 이전

연개소문은 ‘대인’이었고 그것은 당시 고구려 조정과 당에서 인정한 그의 ‘공식적 지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관등이나 관직 혹은 최소한 고구려 조정에 出仕한 인물의 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관등과 관직 중 어느 것이 대인에 해당되는지가 불확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료①과 ②에서 “攝職”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해 논지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²²⁾ 하지만 이는 제3자인 중국인들이 고구려에서 전개된 해당 현상을 두고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임에 유의하자. 예컨대 중국인들은 자료①, ②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관등과 관직의 성격이 복합된 막리지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막리지의 관직적 측면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 그들은 자신들에게 존재하는 현상을 기준으로 ‘고구려만의 현상’을 이해하려 함으로써 그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고구려 후기의 대인이 이와 같은 ‘공식적 지위’였다면, 앞에서 찾아 본 대인의 일반적 용례 중 중국 측 자료에서 확인되는 ① 지위가 높은 자나 王, 公, 貴族을 지칭하는 말, ④궁궐 近侍에 대한 존칭, ⑤世家 豪族을 가리키는 말 등이 7세기 고구려의 ‘대인’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왜냐하면 ①, ④, ⑤번은 어떤 사람의 공식적 지위를 특정하게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 이 중 ④번 ‘궁궐 근시에 대한 존칭’에 주목해 대인을 당시 고구려의 近侍職 가운데 하나였던 막리지에 비정할

22) 기왕에 대인을 육살에 비정한 견해에서 그러한 면을 보였다. 즉 자료상의 “섭직”에 근거해 대인을 부를 관장하는 ‘관직’으로 이해하고 육살에 비정했던 것이다 (노태돈, 앞의 책, 1999, 468~469쪽).

23) 아울러 당의 “병부상서 겸 중서령”을 막리지의 본래적 기능과 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5~86쪽)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료①, ②에서 전하는 막리지의 위상은 연개소문이 정변 후 막리지에 취임하여 국정을 전담한 현실을 唐人들이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일 뿐, 그것을 막리지의 본래적 위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확대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도 있겠으나, 어떤 인물의 공식적 지위를 명기해야 하는 王命文書(자료④)나 외국에 대한 정세보고서(자료③)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존칭’을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상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연개소문은 자료①, ②, ③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듯 정변 ‘이후’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²⁴⁾

둘째, 대인은 ‘部’를 冠稱하고 있다. 고구려 내부의 왕명문서에서도 그렇게 쓰였고, 당에서도 그렇게 썼다. 물론 당시의 부는 전술한 대로 귀족가문의 존재양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와 ‘대인’의 관련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5~6세기에 걸쳐있는 각종 금석문 자료와 『일본서기』 등에 기록되어 있듯 당시 고구려 官人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部를 官等 앞에 관칭하였고²⁵⁾ 부와 관련된 관직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某部の 官職名’으로 썼기 때문이다.²⁶⁾ 이를 고려할 때 대인의 ‘부’ 관칭은, 대인이 ‘관등’이었거나 아니면 ‘(부와 관련된) 관직’이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우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대인을 당시 부를 관장하던 관직인 육살에 비정할 경우 대인과 관련된 현전자료의 조건-예컨대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관등 문제-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는 대인이 최소한 관직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대인은 그 자체 관등이었을까. 아니면 관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이는 뒤에서 대인의 윤곽이 드러난 다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4) 이와 관련해 고구려 승려 道顯이 기록한 『日本世記』에서 연개소문을 가리켜 “內臣 蓋金”이라 표기한 점 역시 주목된다(『日本書紀』卷26 齊明紀 6年 7月). 즉 도현은 정변 이후 국왕 근시직인 막리지에 취임한 연개소문의 지위를 가리켜 ‘내신’이라 표기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고구려인들이 국왕 근시직을 ‘내신’ 등으로 불렀을 뿐, ‘대인’으로 표기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25) 이와 관련한 사례들은 임기환, 앞의 책, 2004, 58~59쪽에 정리되어 있다.

26) 예컨대 중국 측 자료에서 확인되는 북부육살 고연수·남부육살 고헤진이 그러한 사례이다. 따라서 대인을 관직에 비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部와 관련된 관직’으로 비정해야 한다.

셋째, 대인의 관등·관직 여부와는 별도로 대인의 역할 혹은 권한과 관련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하나는 대인이 열병식을 빙자해 ‘部兵’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대인이 국왕으로부터 천리장성 監役의 사명을 받고 있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그동안 대인을 동부육살에 비정하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이기도 했으며, 당시 연개소문의 군사권 장악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였다.²⁷⁾ 이는 대인이 부를 관칭하고 있는 것과 연개소문의 부병 동원 사실을 연결시켜 본 시각이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대인은 부와 관련된 관직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部兵’이야말로 이 시기 고구려 중앙군의 일반적 존재양태였다는 점이다. 당시 고구려 중앙군의 編制 실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부병’이 중앙군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²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연개소문이 정변 당시 ‘부병(=중앙군)’을 동원한 사실만으로 그 이전 그가 ‘特定 部の 부병’을 관장하는 직책에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종래에는 당시 중앙군의 존재양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개소문이 정변에 필요한 무력으로 ‘부병’을 동원한 사실에만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강조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연개소문이 부병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당시의 제반정황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²⁹⁾

27) 이는 「천남생묘지명」, 「천현성묘지명」 등에서 연자유-연태조-연개소문으로 이어지는 연씨 일가가 兵權을 장악한 것처럼 기록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이들 묘지명의 서술구조와 관련해 뒤에서 살펴보겠다.

28) 『三國史記』 卷45 列傳 第5 溫達,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至其日出獵, 羣臣及五部兵士皆從, 於是溫達以所養之馬隨行.” 이와 관련해 중앙군의 평상시 존재양태는 ‘5부병’이었으며 비상시 出戰양태는 『한원』 고려기에 전하는 무관조직으로 보는 견해(이문기, 앞의 논문, 2007, 174쪽)도 있다.

29) 사료상에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결심한 뒤 私的으로 部兵을 소집해 도성 남쪽에서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부병은 분명 公兵이므로 이 열병식의 정체는, 세부적인 의견에 있어선 연구자 간의 차이가 있지만, 公的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노태돈, 앞의 책, 1999, 471~474쪽; 임기환, 앞의 책,

한편, 연개소문이 영류왕으로부터 千里長城 監役의 임무를 부여 받고 있는 사실 역시 대인의 권한·직능과 관련해 고려해볼 만한 대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인의 고유한 관장 업무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만일 그러했다면 영류왕이 ‘특별히’ 서부대인 연개소문에게 장성 감역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혹 이때의 부를 이른바 ‘全國 5部’로 풀이하여³⁰⁾ 서부를 요동지역에 비정한 다음, 당시 서부 전선에서 축성되고 있던 장성 감역 임무를 ‘서부대인 연개소문’이 부여받았다고 추론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천리장성 축성은 이 시기에만 진행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631년 이래 장장 16년에 걸친 大役事였으며 對唐戰爭 이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만일 연개소문이 ‘전국 5부’의 하나인 서부를

2004, 294쪽 ; 이도학, 앞의 논문, 2006, 36쪽). 이는 고구려 후기 ‘宮門’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도성의 의례 공간체계를 염두에 둘 때도 그러하다(여호규, 「고구려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 『한국고대사연구』 71, 2013, 84~85쪽). 다만 열병식에 동원된 부병 전체가 大臣들과 영류왕을 죽인 정변의 기본 동력이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아마 그 기본 동력은 연씨 가문의 私兵과 연개소문과 사적으로 연결된 일부 부병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된다. 왜냐면 연개소문이 개최한 열병식이 公的인 사유에서 개최된 것이라면 열병식에 동원된 부병 역시 연개소문의 의지나 명령만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열병식은 642년 정월 영류왕이 王命으로 연개소문에게 장성 감역을 명한 사실(자료④)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열병식장에 1백 명이 넘는 대신들이 운집했던 것도 그것이 왕명과 결부된 열병식이었던 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삼국시대 열병식의 속성이 국왕의 군사통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으로(김영하,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볼 때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열병식 사실만으로 정변 이전 연개소문이 부병 전체를 장악,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642년 전후 고구려 政局의 동향 및 당시의 제반 정황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글을 토대로 한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 30) 주지하다시피 고구려 후기 ‘전국 5부’의 存否 여부는 현재 논란이 있다. 다만 전국 5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 연개소문이 역임한 ‘서(동)부대인’의 ‘부’는, 전국 5부 중의 하나로 볼 수 없을 듯하다. 단적으로 연개소문이 영류왕으로부터 천리장성 감역을 명령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왜냐면 이는 당시 연개소문이 지방이 아닌 중앙정계에서 활약하고 있었음을 반증해주기 때문이다.

관장하는 대인이었다면, 영류왕이 곧이 그에게 장성 감역 명령을 내릴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리장성 감역과 같은 外方의 축성 감역이 대인의 고유한 소관 업무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처럼 현전자료상 대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기록의 부실로 돌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실제의 반영일 수도 있다.³¹⁾ 다시 말해 대인은 그 자체 고유한 직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인은 “國人”으로 표기된 누군가들의 승인을 통해 임명, 유지될 수 있었다. 자료②에서 그러한 모습의 편린이 엿보이는데,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승계하려는 지위와 관련해선 현재 논란이 많지만, 정변 이전 그의 지위가 ‘서(동)부대인’이었음은 명확한 것 같다. 특히 정변 9개월 전인 642년 1월의 시점에서 그는 ‘서부대인’이었고(자료④) 정변 무렵인 같은 해 10월에도 그 점은 동일하였다(자료③). 여기서 자료②가 전하는 상황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정변이 일어난 642년 10월이나 연개소문이 서부대인으로 재임 중이던 642년 1월부터 그리 먼 시기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가 귀족들에게 嗣位하고자 호소했던 대상은 대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자료②는 당시 연개소문이 ‘대인’으로 승인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대인이 “國人”으로 표기된 이들의 합의와 승인을 거쳐 임명되는 지위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합의 과정의 실체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대인이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한 최고의 관직인 대대로와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대인’의 가장 중요한

31) 다만, 대인이 이처럼 왕명에 따라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 모습은 6세기 초반 불평비에서 확인되는 신라의 대인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하지만 관직이 미분화된 상태였던 6세기 초반 신라의 상황이 7세기 고구려의 상황과 동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영류왕의 이 조처는 종래의 해석대로 연개소문 일가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사료적 특징으로서 자료②에서 연태조의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표기한 점이 그것이다. 이미 2장에서 지적했듯 동부대인을 특정 관직에 비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동부대인을 관등에 비정해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인과 連稱되고 있는 대대로 역시 관등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에 대인을 ‘신분’ 내지 ‘사회적 지위’로 볼 여지도 있다. 실제 2장에서 언급했듯 기왕의 연구에서 대인을 유력 귀족가문의 세력기반과 연관된 사회적 지위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왔다. 또한 전술한대로 중국·일본에서 쓰인 대인의 용례를 보면 신분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다. 대인이 당시 고구려 최대의 귀족가문이었던 연개소문 일가와 관련해서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고구려 후기 대인의 성격을 ‘사회적(또는 신분적) 지위’로만 규정하기도 어렵다. 전술한 것처럼 그것은 때로 단독으로 공식문서에 쓰인 ‘공식적(정치적) 지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인은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사이에서 복합적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도 제기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동부대인 대대로”와 관련해 자료상에서 엿보이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바로 연태조의 최종 지위와 그것을 승계했다고 전하는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에 대한 기록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대인과 대대로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료상에 나타나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는 각 시대별 자료마다 “막리지”,³²⁾ “대대로”,³³⁾ “동부대인 대대로”³⁴⁾ 등으로 엇갈려서

32) 「泉男生墓誌銘」: “曾祖子遊, 祖太祚, 竝任莫離支, 父蓋金, 任太大對盧, 乃祖乃父, 良治良弓, 竝執兵鈴, 威專國柄.”

「泉獻誠墓誌銘」: “曾祖大祚, 本國任莫離之, 捉兵馬, 氣壓三韓, 聲雄五部. 祖蓋金, 本國任太大對盧, 捉兵馬, 父承子襲, 秉權耀寵.”

33) 「泉男産墓誌銘」: “乃高乃曾, 繼中裏之顯位, 惟祖(연태조-필자)惟禰(연개소문-필자), 傳對盧之大名…”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이한 점은, 연태조의 최종 지위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승계했다는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는 위의 인용 자료들에서 한결같이 ‘서(동)부대인’으로만 나타나는 점이다. 그렇다면 연개소문은 연태조로부터 ‘대인’만을 이어받았던 것일까. 그리고 연태조의 최종 지위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종래에는 대개 어느 한 쪽만을 取信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자료상에 엇갈리게 나타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을 근거 없는 기록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 자체가 당시의 현실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우선 명백한 것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자.

막리지와 대대로는 분명 구분되는 官이었다. 따라서 연태조가 이를 동시에 역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일 그가 대대로를 역임했다면, 그것은 막리지를 역임한 이후 관등이 한 단계 승진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직계 자손의 묘지명에서 당연히 그의 최종 官을 대대로로 기술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천남생묘지명」과 「천헌성묘지명」에선 그것을 막리지만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대대로를 지낸 것으로 전하는 「천남산묘지명」과 자료②(『신당서』)는 오류인 것일까.

흔히 「천남산묘지명」의 경우 천남생·헌성의 묘지명보다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도 그런 면이 보인다. 예컨대 고구려 말기 관등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周書』를 참조해 그것을 13等으로 기술했거나³⁵⁾ 先祖의 이력을 기록한 부분의 경우 對句를 맞추기 위해 내용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있다.³⁶⁾ 하지만 「천남산묘지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도 확실히

34)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三國史記』 卷49 列傳 第9 蓋蘇文.

35) 임기환, 앞의 책, 2004, 217쪽.

36) 노태돈, 앞의 책, 1999, 468쪽의 註 77).

있다. 예컨대 남산의 고조와 증조가 “中裏의 顯位”를 이었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 구절은 현대의 연구자들이 막리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주었다.³⁷⁾ 그런 만큼 「천남산묘지명」에서 연태조와 연개소문이 대대로를 역임한 것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실제 연개소문은 (太)大對廬를 지냈음이 사실로 확인되며³⁸⁾ 또한 자료②에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대대로로 기록하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럼 자료②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 『신당서』 고려전의 경우 고구려 官制에 대한 소개 기록이 오류투성이인 점에서 드러나듯 일부 결함을 지니고 있어 사료적 가치에 문제가 있다.³⁹⁾ 하지만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지위가 ‘동(서)부대인’이 확실했고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嗣位에 성공한 만큼, 연태조의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전하고 있는 자료②의 기록 역시 소홀히 여길 수는 없다. 이 기록은 분명 일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최소한 연태조가 죽기 직전 동부대인의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아울러 자료②에선 자료①(『구당서』)과 달리 연개소문을 ‘동부대인’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資治通鑑考異』에 따르면, 자료③(『자치통감』)에서 연개소문을 ‘동부대인’으로 기록한 것은 唐代의 實錄 자료에 의거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⁴⁰⁾ 이는 역시 ‘동부대인’으로 기술한 자료②가 唐 실록 자료에 근거해 서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37)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73~75쪽.

38) 이와 관련해 연개소문의 대대로 轉任 시점을 661년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문기,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64~66쪽).

39) 일반적으로 『신당서』는 당 후반기의 사료 부족과 번잡한 서술을 보완하는 데 성과가 있었지만 원사료를 풍부하게 전한 『구당서』를 지나치게 삭제하고 화려한 문장에 치중한 탓에 고증은 소홀했다는 평가를 듣는다(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83~84쪽).

40) 『資治通鑑考異』 卷10 唐紀2 太宗 16年 11月. “高麗東部大人泉蓋蘇文：舊傳云，西部大人。今從實錄。”

한다. 아울러 자료②는 시기적으로 볼 때 연태조의 죽음과 연개소문의 등장이라는 특정 시기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분명하게 떠오르는 사실은, 연태조가 막리지와 동부대인을 역임한 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연태조가 최후 시점에서 역임했음이 분명하다. 연개소문이 부친으로부터 동부대인을 승계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왜 「천남생묘지명」에서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만 기록했을까. 그런 반면 「천남산묘지명」과 자료②에서는 왜 그것을 대대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⁴¹⁾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대인이 곧 막리지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만일 막리지가 대인이었다면, 연개소문의 직위는 정변을 일으킨 뒤에도 그 이전에 이어 ‘대인’이라 불렸을 것이고, 외국에도 그렇게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인=막리지였을 경우 당시 중국인들도 그 존재만 알았을 뿐, 실체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막리지⁴²⁾ 642년 정변 이후 것처럼 중국 史書에 특필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태조가 최후에 동부대인을 역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만큼 연태조의 최종 지위가 “막리지”와 “대대로”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대인’과 ‘대대로’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⁴³⁾ 자료②의 “동부대인 대대로”라는 連稱 표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제 대인과 대대로 사이에 존재하는 이 ‘모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는 곧 대인의 실체와 직결되는 것이다. 절을 달리해 계속 살펴본다.

41) 그 이유는 후술할 것이다.

42) 이는 『한원』 所引 「고려기」에서 막하하라지(=막리지)를 태대형의 ‘異稱’으로 기록한 점과 『구·신당서』 등에서 막리지의 ‘관등으로서의 측면’(=중리태대형)은 배제한 채 ‘관직으로서의 측면’(병부상서 겸 중서령)만 기록한 점에서 드러난다.

43) 연태조의 최종 지위는 뒷 절에서 확정할 것이다.

나.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 : 관등으로서의 대대로

이상에서 고구려 후기 대인의 실체를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록상에 나타나는 대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7세기 고구려의 ‘대인’은 대체로 5가지의 특징을 지니며 자료상에 출현하고 있었던바, 이는 곧 대인의 실체 확정에 요구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먼저 대인은 ‘공식적인(=정치적인) 지위’였다. 또한 대인은 ‘(部와 관련된) 관직’은 아니었다. 현전기록상 대인이 수행한 구체적 직무가 드러나지 않는 점 역시 대인이 관직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인이 관직이 아니었다면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한 특정 관등에 해당되거나 혹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동시에 대인은 당시 귀족가문의 세력기반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요소도 일부 지녔다. 아울러 대인은 기록상에 “國人”으로 표기된 이들의 합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대인의 실체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실마리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에 대한 검토에서 얻을 수 있었다. 대인이 대대로와 모종의 연관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인의 실체는 이상의 특징적 조건을 전부 만족시킬 수 있을 때 대인의 실체는 비로소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서술의 편의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구려 후기 대인은 대대로에 도전·취임할 수 있는 지위를 가리켰다. 이와 같이 비정해야만 위에서 나열한 대인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우선 자료상에 엇갈리게 나타나는 연태조의 최종 지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전술한대로 현전자료상 연태조의 최종 지위로서 확실한 것은 ‘막리지’와 ‘동부대인’이었다. 특히 그의 직계 자손들은 그것을 ‘막리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단, 「천남산묘지명」은 예외). 그럼에도 일부 자료에서 대대로가 동부대인과 연관성을 지니며 연태조의 최종 지위로 기록된 점은 대인이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담보한 지위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연태조의 최종 직위가 ‘막리지’로도 나타나고 ‘동부대인 대대로’로도 나타났던 점은 대인이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었던 당시의 사정이 투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또한 대인이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지위로 인정받았고, 그런 한편 귀족가문의 세력기반에서 비롯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측면을 지녔던 점 역시 이로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당시 대대로에 도전·취임할 수 있었던 귀족가문의 세력기반은 여타 귀족가문의 그것과 월등한 격차를 자랑했을 것이며, 그런 탓에 대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귀족가문은 극소수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현전자료상 ‘대인’이 연개소문 일가와 관련된 자료에서만 확인되고, 중국 사서에서 마치 그것이 세습적인 것처럼 묘사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었던 ‘대인’이 “국인”으로 표현된 다른 귀족들의 합의를 거쳐 승인받는 과정 역시 각종 중국 측 자료에 전하는 대대로 선임 과정 관련 기록을 통해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때의 “국인”은 여타의 다른 ‘대인들’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複數의 대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大人과 大對盧가 승인 및 선임되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를 ‘大人會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앞서 미루어두었던 ‘大人’과 ‘官等’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보자.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상정을 해볼 수 있다. 하나는, 대인이 그 자체 특정 관등이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인이 당시의 관등체계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공식적 지위였을 가능성이다. 다만, 이 시기 관등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대인이 비록 그 자체 관등은 아니었더라도 특정 관등에 도달한 자만이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등체계와 일정한 연관성 없이

‘독자적 지위’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인이 이미 제 1위의 관등인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공인받은 지위였다 는 점에서 그 점은 드러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강대한 세 력기반을 갖춘 극소수의 유력 귀족가문이 대인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은 전술한대로다. 그래서 대인은 고구려 초기의 大加처럼 ‘사 회적 지위’를 반영한 면이 있었다. 다만 古代社會에선 관등제가 그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관등체계 속에서 ‘대인’ 의 위상을 탐색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淵氏 가문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 우선 주목할 점은 직계 자손인 「천남생·천현성묘지명」에 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로 기록한 점이다. 이를 따를 경우 집안에서 선택받은 귀족가문의 子弟가 아버지의 최종 관등을 승계 하는 것이 관례였던 당시의 상황을⁴⁴⁾ 고려할 때 연개소문 역시 정 변 이전에 이미 막리지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인은 막리 지의 ‘異稱’이었거나 혹은 막리지, 즉 중리태대형의 관등을 확보한 자가 大對盧 취임의 자격으로서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셈이 된다. 그런데 대인이 막리지의 이칭이었다면, 현전자료상 ‘부 의 대인’과 막리지가 구별되어 쓰이고 있는 점을⁴⁵⁾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사서에는 정변 이전 ‘동(서)부대인’이었던 연개소문이 정 변 이후 스스로 막리지가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를 대인 =막리지임을 몰랐던 중국인들의 誤記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경 우 국내 전승 자료에서도(자료④) 연개소문의 정변 전 지위를 ‘서부 대인’으로 쓰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막리지라는 본래 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인이라는 이칭만을 특별히 고집할 이유 가 있었을까. 또한 연개소문 정변 이전 중국인들이 막리지의 ‘존재’

44) 여호규, 앞의 책, 2014, 411~415쪽.

45) 이 점은 이미 武田幸男이 지적한 바 있다(武田幸男,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 『朝鮮學報』 86, 1978, 27쪽).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⁴⁶⁾ 그럼에도 중국인들이 정변 이전 그의 지위를 ‘대인’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대인을 막리지의 이칭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이제 유력하게 떠오르는 가능성은 막리지가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대인의 지위를 획득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대인은 관등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막리지라는 특정 관등에 오른 자만이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지위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지위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셈이다. 즉, 앞서 도출한 사료상에 나타나는 대인의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 또 당시 막리지는 유력 귀족가문의 대표자가 보유하는 관등이었고⁴⁷⁾ 막리지와 같은 중리계 관등은 최종적으로 父職을 승습할 자제에게만 수여하던 특권적인 관등이었다는 견해를⁴⁸⁾ 염두에 둘 때 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막리지가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었다는 종래의 연구 성과⁴⁹⁾ 역시 이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다만 막리지(중리태대형)만이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外廷의 태대형 역시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리계 관등이 기존의 (兄系)관등에 대응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점을⁵⁰⁾ 고려하면, 태대형 역시 대인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複數制의 官이었던 모든 막리지에게 자동적으로 대인의 지위가 주어졌는지의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모든 태대형과 막리지에게 대인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주어졌다면 사실상 대인은 막리지 혹은

46) 「高麗記」에서 전하는 태대형의 이칭인 막하하라지가 막리지를 가리킨다는 것은 武田幸男의 지적 이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7) 임기환, 앞의 책, 2004, 298쪽.

48) 여호규, 앞의 책, 2014, 414~416쪽.

49) 임기환, 앞의 책, 2004.

50) 이문기, 「高句麗 中裏制의 構造와 그 變化」, 『대구사학』 71, 2003, 123쪽.

태대형의 이칭과 다름없게 된다는 점에서, 관등이 막리지나 태대형에 도달했을지라도 자동적으로 대인이 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대인이 여러 태대형이나 막리지 중 일부에게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로서 주어졌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이 경우 태대형과 막리지 중 대인의 지위를 보유한 자는 대대로를 한 차례 역임한 뒤 관등상으로는 다시 막리지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⁵¹⁾

그런데 이 가능성을 확정하기만은 어려운 점들이 있다. 먼저 기존의 비판처럼 제1위인 대대로와 제2위인 태대형 사이에昇降 관계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관등체계의 속성상 정치적 탄압이나 처벌의 경우가 아니면 관등의 강등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⁵²⁾ 물론 대대로를 역임한 자가 그것으로써 관료생활을 마무리했다면, 혹은 대대로에 한 번 취임한 뒤 물러난 자는 대대로에 재도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당시에 존재했다면 이러한 비판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대로는, 비록 稱職者는 年限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3년의 임기직이었으며 최소한 終身職은 아니었다. 그런 만큼 대대로를 한 번 역임한 자가 그것만으로 관료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대대로의 임기와 관련해 예외규정이 있었던 것도 이런 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대인이 공식적으로 ‘部’를 관칭하고 있는 점이다. 전술한대로 당시의 일반적 관례로는 官等名 앞에 부를 관칭한 경우와, 부와 관련된 관직명 앞에 부를 관칭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대인은 분명 부와 관련된 관직은 아니었다. 그리고 대인이 특정 관등이 아니었다면 공식적으로 부를 관칭한 이유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물론 이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겠지만⁵³⁾

51) 이 같은 상정은 이미 임기환, 앞의 책, 2004, 287~298쪽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52)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71쪽.

53) 우선 대인이 그 자체 관등은 아니었지만, 관등과 같은 공식적 지위 앞에 부를 관

이러한 가능성들은 이 시기의 관례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현재로선 단정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는 『신당서』 고려전에서 연태조의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기록한 점이다. 이는 물론 대인이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지위였던 탓에 『신당서』의 찬자가 그와 같이 기록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막리지와 대인 사이에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었다면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당서』 천남생전과 「천남생묘지명」의 전거자료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⁵⁴⁾ 그런 만큼 『신당서』의 찬자 역시 연태조의 최종 지위가 막리지였다는 「천남생묘지명」의 전승을 몰랐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신당서』의 찬자가 직계 자손의 전승과 달리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명시한 점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전술한 것처럼 『신당서』의 연개소문 정변 관련 기록은 唐代 실록 자료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류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네 번째는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를 막리지로 확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가 막리지가 아니었다면, 막리지가 태대형 중 일부가 대대로에 도전, 취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대인의 지위를 보유했다고 보는 시각은 성립조차 될 수 없다. 앞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가 대대로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를 여기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개소문이 정변 이전 막리지가 대대로에 재임

칭하는 일반적 관례에 따라 부를 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대인이 부를 직접 관장하는 관직은 아니었지만, 部의 어떤 요소와 일정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던 탓이었을 수도 있다. 그밖에 대인이 複數로 존재하는 지위였던 탓에 각 대인을 구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부를 관칭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54) 이성제,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기록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149~152쪽.

했는지의 여부는⁵⁵⁾ 현전하는 중국 측 자료와 금석문 자료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다른 제3의 자료를 확보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서기』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642년 2월) 정미일에 ... (고구려) 사신이 물건을 바친 뒤 말하기를 “지난해 6월 (왕의) 동생 왕자가 죽었습니다. 가을 9월 대신 이리가수미가 대왕을 시해하고 아울러 이리거세사 등 180여 인을 죽였습니다. 이어 동생 왕자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자신과 성이 같은 도수류금류를 대신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였다.⁵⁶⁾

이 기사는 紀年상 일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개소문 정변 전후 고구려 내부 상황을 전해주는 기록으로 평가받는다.⁵⁷⁾ 이에서 전하는 고구려 使人의 傳言에 따르면, 연개소문(=伊梨柯須彌)의 정변 이전 지위는 “대신”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변을 일으킨 뒤 자신과 同姓인 도수류금류를 역시 대신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점은 이때의 “대신”이 일반명사가 아닌 특정 직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바⁵⁸⁾ 현재 연개소문이 도수류

55) 642년 정변 이전 연개소문의 직위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대로 보는 견해 : 이성시, 「高句麗泉蓋蘇文の政變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31, 1993; 김영하, 「영육으로 얼룩진 비범한 고구려인의 초상 연개소문」, 『내일을 여는 역사』 3, 2000; 이도학, 「高句麗의 內紛과 內戰」, 『고구려연구』 24, 2006.
- 막리지로 보는 견해: 임기환, 앞의 책, 2004.
- 대인으로 보는 견해: 전미희, 앞의 논문, 1994; 노태돈, 앞의 책, 1999; 이문기, 앞의 논문, 2008; 김진한,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정신문화연구』 117, 2009.

56) 『日本書紀』 卷24 皇極紀 元年 2月. “丁未 ... (高麗-필자)使人貢獻既訖而諮云 去年六月 弟王子薨 秋九月 大臣伊梨柯須彌弑大王 并殺伊梨渠世斯等百八十餘人 仍以弟王子兒爲王 以己同姓都須流金流爲大臣”

57) 『聖德太子傳曆』 卷下 皇極天皇 元年에도 이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전한다 (박성봉, 「日本書紀 高句麗 關係 記事의 整理」, 『백산학보』 70, 2004, 208쪽 참조).

58) 북한학계에서는 이때의 “대신”을 고위급 관료들에 대한 범칭으로 보고 있으나

금류에게 수여한 “대신”의 정체는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대대로’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⁵⁹⁾ 그렇다면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 역시 대대로에 비정할 수밖에 없다. 그 역시 “대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연개소문이 정변 이전 ‘대인’이었고 대인이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지위였던 탓에 고구려 사인이 것처럼 말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일본서기』에서 연개소문의 죽음을 전하며 “高麗大臣蓋金 終於其國”라고 기술하고 있는바⁶⁰⁾ 여기서도 연개소문의 직위는 “대신”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최종 직위는 太對盧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⁶¹⁾ 이때의 대신 역시 대대로에 비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서기』의 논리대로라면, 연개소문은 정변 이전 대대로였으나 정변 직후 도수류금류에게 대대로를 수여했으며 죽을 무렵 다시 (태)대대로에 취임했던 셈이 된다. 이러한 양상은 연태조와 연개소문이 대대로를 지낸 것처럼 묘사한 「천남산묘지명」 및 연태조의 최종 지위인 “동부대인 대대로”를 연개소문이 승계했다는 『신당서』 고려전의 기록과 일면 부합하는 면을 보인다.⁶²⁾

(『조선단대사』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67쪽) 문맥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59) 노태돈, 앞의 책, 1999, 475쪽 ; 임기환, 앞의 책, 2004, 304쪽; 이도학, 앞의 논문, 2006, 34쪽 ; 이문기, 앞의 논문, 2008, 72쪽.

60) 『日本書紀』 卷27 天智紀 3年(664年) 10月.

61) 「천남생·천현성묘지명」 및 노태돈, 위의 책, 1999, 480~481쪽; 이문기, 앞의 논문, 2008, 83쪽 참조.

62) 그럼에도 연개소문이 정변 이전 대대로를 역임했다고 선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까닭은 「천남생·현성묘지명」에서 연태조의 최종 직위를 막리지로 기록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한편, 정변 전 제1위의 대대로였던 연개소문이 정변 이후 제2위인 ‘막리지’가 되었다고 본다면 이는 관등체계의 운영상 어색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노태돈, 위의 책, 1999, 468쪽). 다만 이때가 ‘쿠데타’ 직후라는 非常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연개소문이 정변 이전에는 대대로를 역임하였으나 정변 이후 크게 혼란스러워진 국내 정국을[『聖德太子傳曆』 卷下 皇極天皇元年. “大臣入震(=연개소문)弒大王并伊梨渠世斯等 … 緣斯國內大亂也”]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막리지에 취임했을 가능성도 있다(이 역시 이도학, 앞의 논문, 2006; 이문기, 앞

그렇다면 이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종래의 이해와 달리 제1위의 관등인 대대로의 정원을 複數로 상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전기록상 대대로는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에서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한 관직이었으며, 3년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자연히 대대로는 1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대로처럼 관등과 관직이 복합된 官이었던 막리지 역시 複數制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그와 같은 고구려 관제의 특징을 중국인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물론 국사를 총괄하는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1인이었겠지만—‘관등으로서의 대대로’는 복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비슷한 시기 백제·신라 역시 제1위의 관등인 佐 卞과 角干(伊伐滄)의 정원이 복수였던 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⁶³⁾ 이와 관련해 대대로에 대한 다음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자.

높은 관으로는 대대로가 있으며 (중략) 무릇 13등급이 있어 내외의 일을 나누어 맡는다. 그 중 대대로는 (세력의) 강약으로써 서로 싸워 빼앗아서 스스로 그것이 되며 왕의 임명을 거치지 않는다.(『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 上 高麗)

高麗記에 이르기를, 그 나라가 설치한 관에는 9등급이 있다. 첫째는 吐 擗이다. 1품에 비견되며 옛 이름은 大對盧이다. 國事를 총괄한다. 3년마다 한번 씩 교체하는데 만약 직무에 알맞은 자라면 年限에 구속되지 않는다. 교체하는

의 논문, 2008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중국 측 사서에서 연개소문이 정변 이후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63) 백제의 경우 처음에는 좌평의 정원이 1명이었지만, 한성시대에 이미 좌평 자체가 상·중·하로 分化되어 정원이 5명인 5좌평제로 운영되었고, 위덕왕대에는 좌평의 명칭이 각각의 소관 업무에 근거한 것으로 바뀌어 이른바 6좌평제가 운영되었다. 다만 좌평 중에서도 상좌평과 내신좌평이 수석 좌평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노중국, 「중앙통치조직」, 『한국사』 6 백제,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168~177쪽) 이점은 신라와 약간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날에 혹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모두 병사를 정돈하여 공격하고 승자가 그것이 된다.(『翰苑』 蕃夷部 高麗)

위의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주서』에서는 대대로의 ‘관등으로서의 측면’만 기록하고 있을 뿐, 관직으로서의 역할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한원』 高麗記에서는 대대로가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하는 관직으로서 3년 임기제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대체로 『주서』는 6세기 중후반, 『한원』 고려기는 7세기 중엽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 양자 간에 보이는 내용상의 차이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고구려 자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들이 각기 입수한 정보의 충실성의 차이에 의해 비롯된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⁶⁴⁾

이들 기록이 전해주듯 ‘서로 싸워 승자가 차지하는 대대로’가 1인이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양자 모두 대대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싸운 뒤 승자가 대대로에 취임한다고 전하면서도 정작 “서로”의 정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얼핏 읽으면 현재 북한학계의 이해방식처럼 대대로끼리 대대로 자리를 놓고 싸운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다.⁶⁵⁾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더욱이

64) 비록 『주서』에서 대대로의 관등으로서의 측면만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지만, 그 서술맥락상 대대로가 최고의 관직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쟁투의 대상이 되었을리 없으므로 대대로가 관직의 측면도 지녔음을 아울러 짐작 해볼 수 있다. 즉 대대로의 관등과 관직이 복합된 측면은 『주서』 단계에서도 동일했던 것이다. 다만 『주서』의 찬자는 관등과 관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는 “凡十三等 分掌内外事焉”이라는 기술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서』와 『한원』의 대대로 관련 기록에서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양 찬자가 입수한 정보의 충실성 및 고구려 官制에 대한 理解度에 따른 차이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3년 임기의 원칙 등은 고구려 자체 내의 변화였을 가능성이 있다.

65) 손영중, 앞의 책, 1997, 55쪽; 『조선단대사』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49쪽. 다만 현재 북한 학계는 이 점이 “대대로가 나라 일을 다 맡아본다는 말 자체와 모순되는 말”이라 하여 『주서』와 『한원』의 대대로 관련 기록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한원』 高麗記의 경우 저자가 직접 고구려에 방문하여 얻은 정보여서 『주서』의 동일 대상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구체성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그 점만큼은 적시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 깊어진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점은 고려기에서 대대로의 새로운 명칭으로 ‘吐擗’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즉 641년의 시점에서 대대로는 토졸의 옛 이름(舊名)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미심쩍은 점은 대대로의 명칭이 7세기 어느 때에 토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나 신라 측, 그리고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에서 “토졸”이 아닌 “대대로”만이 지속적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다. 예컨대 641년 고구려를 방문한 진대덕은 귀국한 뒤 당 태종에게 “대대로”를 만났다고 보고하였다.⁶⁶⁾ 또 『삼국사기』 金庾信傳에서는 642년 金春秋의 평양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이때 김춘추가 “太大對盧 蓋金”을 만났다고 하였다.⁶⁷⁾ 한편 「천남생·현성묘지명」 및 「천남산 묘지명」에서도 연개소문의 최종 직위를 “태대대로” 혹은 “대대로 (=“對盧의 大名””)로 기록하였다. 이처럼 고구려 최말기 및 그 이후까지 ‘대대로’가 그대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대대로를 토졸의 舊名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종래에도 고려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등의 異稱에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⁶⁸⁾ 이 역시 주의해야 할 측면이 아닌가 한다. 이에 더해 대대로의 명칭이 토졸로 바뀌었을 뚜렷한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다. 『주서』 단계에 비해 641년의 시점에서 대대로의 기본 성격이 근본적

66)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大德還奏, 帝悅. 大德又言, 聞高昌滅, 其大對盧三至館, 有加禮焉.”

67) 『三國史記』 卷41 列傳 第1 金庾信. 물론 642년 시점에서 연개소문의 직위는 ‘막리지’였다. 따라서 이는 연개소문의 최종 직위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삼국사기』 김유신전이 김유신의 玄孫 金長淸이 편찬한 그의 行錄 10권을 저본 자료로 삼은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8)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1~83쪽. 물론 “舊名”이 곧 “이칭”은 아니므로 이러한 지적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른 자료와의 비교 검토 결과 高麗記의 기술과 판이한 양상이 확인된다면 의심이 필요성은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으로 바뀐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토졸이라는 명칭 자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토졸의 ‘졸’은 고구려 官等名の 語尾에 흔히 보이는 ‘절’이나 ‘졸’과 통하는 말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周書』·『隋書』 고려전의 ‘烏拙’, 『한원』 고려기의 鬱折, 過節, 不節 등이 그것이다.⁶⁹⁾ 그렇다면 토졸은 앞서 상정한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를 의미하고, 이를 漢文式으로 표기할 때 ‘대인’이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연 대대로는 제1위의 관등인 토졸만이 취임할 수 있던 최고의 관직으로 자리매김 된다. 아마 종전까지는 대대로가 ‘複數로 존재하는 제1위의 관등’과 ‘1인으로 존재하는 최고 관직’을 함께 가리켰으나 이때에 이르러 양자 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관등명으로는 ‘토졸’이라 새로 부르고, 首相에 해당하는 최고 관직은 여전히 ‘대대로’라 불렀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진대덕은 대대로가 토졸의 옛 이름이라는 피상적인 기록만 남겼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唐使 진대덕이 만난 “대대로”와 신라측 기록 및 「천남생·현성묘지명」에서 연개소문의 직위로서 기록된 “태대대로”는, 모두 ‘토졸(관등으로서의 대대로)’이 아닌 ‘최고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인을 ‘관등으로서의 대대로=토졸’에 비정할 때 앞서 제기한, 태대형이나 막리지 중 일부가 대인의 지위를 특권적으로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내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 즉, 막리지와 대대로 간의 승강 관계에 대한 의문, 대인이 공식적으로 ‘부’를 관칭하며 단독으로 출현하고 있는 점, 『신당서』 고려전과 「천남산묘지명」에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동부대인) 대대로”로 전한 점,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가 대대로였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일본

69) 여기서 ‘오졸’은 고려기의 ‘울절’과 동일 관등으로, ‘과절’과 ‘부절’은 관직명으로 보는 견해(임기환, 앞의 책, 2004, 208~208:220쪽)가 있다.

서기』에 전해지게 된 이유 등이 해명될 여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우선 막리지와 대대로 간의 승강 관계에 대한 의문은, 최고 관직으로서 대대로를 역임한 뒤에도 여전히 관등상으로는 대대로(=토졸, 대인)를 유지했을 것이므로 그것을 ‘승강 관계’로 볼 필요가 사라진다. 그리고 대인이 부를 관칭한 점 역시 그것이 관등이었기 때문이므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어 연태조의 최종 지위 및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를 대대대로 전하고 있는 기록이 남게 된 이유 역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즉 연태조는 죽기 전 최소한 관등상으로는 대인에 도달하였던 것이고, 연개소문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그러한 부친의 관등(대인=토졸=관등으로서의 대대로)을 승습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태대형·막리지와 대대로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마 태대형·막리지에서 곧바로 ‘최고관직으로서의 대대로’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선은 ‘관등으로서의 대대로’, 즉 ‘대인(=토졸)’로 관등의 승급을 거쳐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다음, ‘대인’ 간의 혐의나 역학관계에 의해 대대로 취임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물론 대인 관등의 획득 역시 여타 대인들의 승인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⁷⁰⁾ 그런 점에서 대대로는 ‘1관직 복수관등제’가 아닌 ‘1관직 1관등제’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고구려에선 1관직 복수관등제가 일반적이었지만, 「고려기」에서 1관직 1관등제가 일부 존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⁷¹⁾ 이러한 상정이 무리는 아니라 판단된다.⁷²⁾ 오히려 이점은

70)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71) “又有拔古鄙大加, 掌賓客, 比鴻臚卿, 以大夫使(=太大使者: 필자)爲之”(『翰苑』蕃夷部 高麗). 한편, 拔古鄙大加가 동일한 「高麗記」를 저본자료로 활용한 『통전』에서는 狀古雛加로 표기되어 있다(『通典』卷186 邊防2 東夷 下高句麗). 「고려기」의 사료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武田幸男, 앞의 논문, 1978, 4~11쪽;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80~82쪽; 임기환, 앞의 책, 2004, 208~209쪽) 狀古雛加가 옳은 표기라 생각된다.

72) 주지하다시피 백제의 경우 ‘1관직 1관등제’가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다만

소수의 유력 귀족가문이 대대로를 독점할 수 있는 특권적 장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관점을 견지할 때 연태조의 직계 자손인 「천남생·현성묘지명」에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로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은 풀이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우선 주목할 점은 고구려 유민 묘지명에서 막리지를 執權職으로 묘사하고 있는 경향이다.⁷³⁾ 「천남생묘지명」에서는 막리지를 지낸 할아버지 太祚와 태대대로를 지낸 아버지 蓋金이 “家業을 이어 나란히 兵權을 쥐고 모두 國權을 오로지하였다”라고 기술하였고, 「천현성묘지명」에서는 본국에서 막리지를 지낸 증조 태조와 태대대로를 지낸 개금이 병권을 장악하고父子가 서로 이어가며 권력을 잡은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서술에서는 막리지와 대대로 사이에 아무런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⁷⁴⁾ 묘지명의 찬자가 양자 간의 차이를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애써 무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고구려에서 연개소문 가문이 지녔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서술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그러한 의도를 지녔던 묘지명의 찬자에게 막리지와 대대로가 별개의 관등이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

최근 백제에서 1관직 복수관 등제가 일부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영심, 「6~7세기 삼국의 관료제 운영과 신분제」, 『한국고대사연구』 54, 2009, 116~117쪽). 그렇다면 고구려와 백제에선 1관직 복수관등제와 1관직 1관등제가 혼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선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73) 이런 경향은 「高質墓誌銘」과 「高慈墓誌銘」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고질·고자묘지명」에서는 각기 祖 혹은 曾祖였던 高式이 ‘2品 막리지’를 지냈다고 서술하여 막리지가 관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한 「高質·高慈墓誌銘」조차도 고식이 역임한 막리지를 두고 각각 “獨知國政 及兵馬事”, “獨知國政位極樞要 職典機權 邦國是均 尊顯莫二”라고 하여 ‘집권적 관직’으로서의 성격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 74) 이처럼 이들 묘지명에서의 막리지에 대한 묘사는 대대로에 버금갈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연개소문 정변 이후 투영된 ‘막리지像’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묘지명 특유의 과장법일 수도 있다. 더욱이 따라서 막리지의 본래적 위상은 ‘內朝의 領袖’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⁷⁵⁾ 즉 묘지명의 찬자는 관등을 통해 드러날 위상보다 兵權 및 國權 장악과 같은 ‘所任’의 서술을 통해 드러날 연개소문 가문의 위상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연한 官僚制에 익숙하여 관등제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唐人들에게 고구려 말기 연개소문 가문의 위상을 환기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唐代 묘지명의 ‘公的 기록물’로서의 성격을⁷⁶⁾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정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의식해야 할 점은 「천남생묘지명」에서 남생의 최종 지위를 太莫離支로 기록하고(「천현성묘지명」에서는 太大莫離支) 이를 軍國을 총괄하는 재상(“阿衡元首”), 즉 執權의 관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태막리지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막리지 연태조’가 ‘태대대로 연개소문’과 별 차이 없는 권력을 누렸다는 식의 기술을 통해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즉, ‘서술구조’라는 면에서 볼 때 연태조가 역임한 ‘막리지’가, 고구려 말기 최고 집권자로 널리 알려진 연개소문이 재임했던 태대대로와 거의 동일한 소임과 위상을 누렸다고 강조하는 것은, ‘태막리지’를 지낸 천남생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아울러 이 효과는 천남생의 對唐 귀부가 고구려 멸망에 일조한 효과를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천남생이 당에서 누렸던 혜택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것이었다. 비록 당에 투항해 고구려 멸망의 결정적 계기를 이끌어냈지만 늘 이국의 주류사회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던 異族 출신 遺民의 처지로서는⁷⁷⁾ 이러한 서술을 통해

75) 이런 서술기법 때문에 현대의 연구자들은 한때 막리지와 대대로를 동일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76) 천남생이나 고자 가문처럼 당에 투항했던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에서는, 본국에서 지냈던 先代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투항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한다. 이는 묘지명 자체가 당 조정에 제출했던 ‘公的 기록물’인 行狀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이국땅에 살던 유민들의 보편적 생존 전략이기도 하였다(이성제, 앞의 논문, 2014).

77) 이성제, 위의 논문, 2014, 146쪽. 이점은 모반 혐의로 억울하게 죽었던 천현성의

자신이 唐 주류사회의 일원에 당당히 편입되고 싶고,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욕망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⁷⁸⁾

이 점은 연태조가 대대로를 지낸 것처럼 기술한 「천남산묘지명」과의 대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남산의 경우 고구려에서의 官歷을 보면 남생과는 다른 코스를 밟고 있다.⁷⁹⁾ 아마 이는 그가 3남으로서 연개소문의 적통 후계자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⁸⁰⁾ 또한 그가 30세에 太夫莫離支가 된 것은 남생의 반역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스스로 취임한 결과였다. 단지 그는 형인 男建과 달리 평양성 함락 직전 보장왕과 함께 당에 투항하였고, 그 덕분에 고구려 멸망 이후 처벌은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 즉, 남산은 남생에 비해 당 측에 대하여 고구려 멸망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과시할만한 공로는 별로 없었고 ‘태대막리지’에 올라 최고 집권자의 위상을 누린 것 역시 멸망 직전이어서 단기간에 그쳤다.⁸¹⁾ 이런 탓에 그는 남생에 비해 당으로부터 크게 혜택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⁸²⁾ 이런 사정은 남생과 달리 애초 그에게 唐 주류사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 78) 그런 점에서 종래에는 남생과 현성의 묘지명을 읽을 때 ‘직계 자손’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최고 집권자로서 당에 투항해 고구려 멸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79) 남생의 경우 중리직을 통한 승진을 꾸준히 이어나가 최종적으로 태막리지에 이르렀던 반면, 남산은 21세에 中裏大活을 역임하였지만, 23세에는 일반 관등인 위두대형으로 옮겨 차이를 보인다.
- 80) 여호규, 앞의 책, 2014, 416~417쪽.
- 81) 기록상으로도 남생의 반역사건 이후 고구려의 집권자로 전면에 나서 주도적인 활약을 했던 존재는 男建으로 나타난다(『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 第10 寶臧王 25~27年). 다만 남건은 평양성 함락 당시 끝까지 당군에 맞섰고, 이 때문에 고구려 멸망 직후 유배되었다.
- 82) 물론 그는 다른 고구려 유민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남생은 당으로부터 고구려 멸망 직전 食田 2천 戶를 수여받았고 668년에는 卞國公으로 進封되어 식읍 3천 호를 받았던 반면 남산의 경우 식읍을 받았다는 기록이 묘지명에 없다. 당으로부터 받은 관작의 등급 역시 남생에 비해 낮았다. 이처럼 남생과 남산에 대한 당의 대우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이 점은 이미 김현숙,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23, 2001,

편입을 향한 욕망의 동기가 뚜렷이 주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실제로도 그의 묘지명을 읽어보면, 남생의 그것과 비교해볼 때 적잖은 차이점이 발견되어 흥미롭다.

무엇보다 그의 묘지명에는 연개소문 가문이 고구려에서 누렸던 ‘독자적 위상’에 대해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천남생묘지명」에서는 ‘泉’에 기원을 둔 집안의 族祖傳承을 애써 적고, 그 집안이 증조 대부터 국권을 專斷한 ‘화려한 가문’이었으며 남생이 그것을 승계했음을 자랑스럽게 적고 있지만, 「천남산묘지명」에서는 그 자신 朱蒙이 건국한 고구려의 후예임을 적은 뒤 官爵 역시 ‘本國王’, 즉 고구려왕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어 집안의 위상에 대한 서술은 “乃高乃曾 繼中裏之顯位 惟祖惟禰 傳對盧之大名 君斧囊象賢 金冊餘慶”의 단 한 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막리지를 직접 표기하지 않은 대신 그것을 “증리의 현위”로 표현해 제3자가 읽을 경우 그 정체를 짐작조차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아마 “막리지”의 직접 표기 자체를 꺼렸던 것 같다. 또 그 자신이 30세에 고국에서 태대막리지가 된 사실을 기술하고 있지만, 곧바로 뒤이어 고구려 멸망 사실을 적고 있어서 그것이 그의 일생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 사실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⁸³⁾ 이는 「천남생묘지명」에서 ‘집권적 관직’으로서 막리지의 위상을 강조하고 남생 자신이 태대막리지가 되어 군국의 원수가 되었다고 기술한 것과는 현저히 다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천남산묘지명」에서의 막리지에 대한 이 같은 서술태도는, 아마 남생의 일생에서 태대막리지 역임이 갖는 의미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唐軍이 그간의 적대국이었던 고구려를 병탄하던 시점에서 태대막리지

75쪽에서 간략히 지적된 바 있다.

83) 「泉男産墓誌銘」.“卅爲太夫莫離支. 官以地遷, 寵非王署. 折風撻羽, 榮絕句驢之鄉, 骨籍施金, 寵殊玄菟之域.”

라는 최고 지위에 있었다고 서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역시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묘지명에서 막리지에 대한 언급 자체를 되도록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아울러 그런 그로서는 할아버지 연태조의 최종 지위 역시 막리지보다 대대로로 기록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

결국 「천남생묘지명」에서는 남생이 역임한 태막리지의 위상을 강조하여 그의 對唐 투항이 지닌 의미를 唐人들에게 환기시키려는 의도에서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막리지로 기록하고 그것의 위상을 대대로와 유사했던 것처럼 기술한 반면, 「천남산묘지명」에서는 정반대로 당군의 고구려 병탄 당시 태대막리지였던 남산의 과거 이력을 부각시키지 않고자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대대로로 기술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천남산묘지명」에서 막리지를 “중리의 현위”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생과 남산은 자신의 일생과 당에서의 현실적 필요에 맞추어 막리지의 위상과 연태조의 최종 지위를 선택적으로 전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 존재했던 동일한 사실’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취사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태조는 막리지와 대대로를 모두 역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천남생묘지명」에서 연태조가 막리지를 역임하면서 대대로와 다름없는 권한과 지위를 누리며 국권을 장악한 것으로 묘사한 점에 유의할 때 연태조는 ‘관직으로서의 대대로’까지 역임했다고 생각된다.⁸⁴⁾ 이로써 『신당서』 고려전의 “동부대인 대대로”라는 표기가 이해될 것이다. 즉 이는 대인(=토졸) 관등을 소지하고 대대로라는 최고관직을 역임했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그리고 연태조의 사후 아들 연개소문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 당연히 부친의 관등, 즉

84) 상식적으로도 연태조가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를 지내지 못했다면 여타 대인들이 그토록 연개소문의 대인 승습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대인(=토졸)을 승습하려 했으나⁸⁵⁾ 역시 일가의 독주를 경제한 여타 귀족가문 및 국왕의 견제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예외적인 사태였고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연개소문의 불만이 누적, 폭발한 결과 642년 10월 그의 주도 하에 대규모의 유혈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는 대인회의의 기능과 관련해 후술).

아울러 연태조의 최종 지위 및 연개소문의 정변 전 지위의 眞相이 이러한 것이었다면, 대대로를 ‘관등(=토졸, 대인)’과 ‘最高 관직’으로 구분하고,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를 複數로 풀이한 앞의 이해는 또 하나의 근거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연태조의 최종 지위 및 그것을 계승한 연개소문의 정변 전 지위를 고려할 때도 ‘대인’의 실체는, ‘관등으로서의 대대로(=토졸)’에 비정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는 ‘관등으로서의 대대로’, 즉 ‘토졸’에 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7세기 고구려 官制에서 대대로는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하는 관직이었지만,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는 복수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을 7세기 중엽부터 ‘토졸’ 혹은 ‘대인’이라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인으로 재임하며 국사를 총괄하던 대대로직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고 관직인 대대로는 제1위의 관등인 대인(=토졸)을 보유한 자들만이 도전,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던 것일까. 앞서 미루어두었던, 연개소문이 “國人”들로부터 대인 지위의 嗣位를 승인받던 협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계속해보자.

85) 국사를 총괄한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3년 임기제에 종신직은 아니었던 만큼 세습직은 아니었을 것이다.

4. 大人會議와 대대로

고구려 후기 귀족회의체의 존재는 다음 기록에서 그 편린이 드러난다.

高麗記에 이르기를, 그 나라가 설치한 관에는 9등급이 있다. 첫째는 吐擗이다. 1품에 비견되며 옛 이름은 大對盧이다. 國事를 총괄한다.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데 만약 직무에 알맞은 자라면 年限에 구속되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혹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모두 병사를 정돈하여 공격하고 승자가 그것이 된다. 그 왕은 단지 궁을 닫고 스스로 지키며 제어할 수 없다. 그 다음은 太太兄이다. 2품에 비견되며 일명 莫何何羅支이다. 그 다음은 鬱折이다. 종2품에 비견되며 중국말로는 主簿이다. 그 다음은 大夫使者이다. 정3품에 비견되며 또한 이름하여 謁奢라고도 한다. 다음은 皂衣頭大兄이다. 종3품에 비견되며 일명 中裏皂衣頭大兄이다. (중략) 이상의 5官이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모의하며 병사를 징발하고 인재를 뽑아 관작을 수여한다.(『翰苑』 蕃夷部 高麗)

이에 따르면 고구려 후기에는 조의두대형(=위두대형) 이상의 ‘上位 5官等’을 보유한 귀족들이 政事를 의논한 회의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용문의 “以前五官 掌機密 謀政事 徵發兵 選授官爵” 구절이 이를 말해준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서는 연구자 간의 이견이 있는데, 이를 ‘五官會議’로 규정하는 견해가⁸⁶⁾ 있는 반면 기존의 귀족회의체인 對盧會議가 변질되어 보다 특권화된 몇몇 對盧 중심으로 운영된 회의체였다고⁸⁷⁾ 풀이하기도 한다. 그런 한편 대대로와 莫離支의 관계에 주목해 양자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귀족회의체를 구성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⁸⁸⁾

86) 이문기, 앞의 논문, 2003, 54~55쪽.

87) 윤성용, 「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11, 1997, 361~362쪽.

88) 임기환, 앞의 책, 2004, 298쪽. 단, 이 견해는 막리지=태대형으로 보는 입장을 전

그런데 위의 기록에서 유의할 점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오관회의’와 달리 대대로 선임을 위한 회의체가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或不相祗服)”이라는 구절은 이를 강력히 시사한다. 이밖에 3년 임기를 채운 대대로의 연임 여부 역시 협의 과정을 거쳤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는 대대로의 선임이나 연임을 결정하는 별개의 회의체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⁸⁹⁾ 그럼에도 기왕의 연구들 예선 ‘대대로의 선 / 연임을 결정하는 귀족회의’와 ‘오관회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⁹⁰⁾ 아마 위의 기록에서 대대로를 선임하는 이 회의체의 실체와 그 구성원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탓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고구려 후기 대대로직에 도전, 취임할 수 있던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대인’이었던 점이 확인된 이상, 이 회의체의 구성원을 複數의 ‘대인’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대대로 선임과 연임을 결정하던 이 회의체를 ‘대인회의’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인회의의 존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 가운데 고구려 중·후기의 귀족회의체로서 ‘對盧會議’를 상정한 견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3세기 무렵 桂婁部の 大加로서 나부의 장인 沛者에 대응되던 ‘대로’는, 이 시기 국왕중심 체제의 정비에 따라 ‘大加’에서 ‘귀족’으로 전신한 지배층 가운데 귀족회의에

제하고 있다.

89) 물론 이 회의체를 이른바 ‘오관회의’와 일치시켜 볼 수도 있다. 특히 오관회의에서 “사람을 뽑아 관작을 수여했다”는 내용에만 주목한다면 그러하다. 그러나 이 글의 1장에서 언급했듯 당시 관등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대로 선임과 연임의 결정은 대대로에 취임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일부 특권적 귀족만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90) 예컨대 太대兄을 대대로를 차지하기 위해 정쟁을 벌였던 유력한 후보로 설명하면서도, 상위 5개 관등을 소지한 귀족들이 참여하던 귀족회의체에서 대대로를 선임했을 것이라는 서술이 있었다(임기환, 「중앙통치조직」, 『한국사』 5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166~167쪽).

참여하여 국가중대사를 논의·결정할 수 있는 중앙귀족에 대한 凡稱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어 이전 시기 那部體制 하의 ‘諸加會議’을 대체하여 중앙귀족(=대로) 중심의 ‘대로회의’가 늦어도 3세기 후반에는 성립했는데, 대로회의의 기능은 제가회의와 거의 다를 바 없었으나 국왕권은 여전히 ‘族長的 성격’을 유지하며 중앙정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던 대로를 견제·통솔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대로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高麗記에 전하는 이른바 ‘5관회의’는 대로 중심 회의가 변질된 결과로서 그것은 보다 특권화된 몇몇 대로만이 회의체를 독점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 하였다.⁹¹⁾

이러한 논지의 핵심은 ‘대로’를 중앙귀족의 범칭으로 본 점이다. 기실 大對盧는 ‘대로’를 전제한 표현이므로⁹²⁾ 대로들의 회의에서 대대로 선임을 결정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신라의 ‘大等’이 고위귀족에 대한 범칭으로서 大等會議의 구성원이었고, 대등회의의 의장이 上大等이었다는 일부 견해들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러하다.⁹³⁾ 그렇다면 과연 대로의 실체는 중앙귀족에 대한 범칭이었고, 그것이 고구려 후기에 이르러 보다 특권화된 고위귀족을 지칭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일까. 현전자료상 3세기까지 관등이었던 對盧의 이후 모습은 『삼국사기』에서 간취되는바, 475년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백제 漢城을 공략했던 “대로” 齊于, 再曾桀婁, 古爾萬年⁹⁴⁾ 및 645년 唐의 고구려 침공에 맞서 遼東으로 급파된 15만 고구려·靺鞨 연합군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작전 계책을 건의한

91) 윤성용, 앞의 논문, 1997, 349~362쪽.

92) 노태돈, 앞의 책, 1999, 444쪽.

93) 윤성용, 위의 논문, 1997, 351쪽; 노태돈, 위의 책, 1999, 445~447쪽. 이러한 이해는 ‘대등’의 어원이 ‘대로’에 있다는 견해(末松保和, 앞의 책, 1954, 322~323쪽)를 통해 더욱 보장될 수도 있다.

94)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21年. “至是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爾萬年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대로” 고정의를 존재가 그것이다.⁹⁵⁾

여기서 475년 당시 대로의 성격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재증걸루와 고이만년까지 대로였는지 여부 역시 확실치 않다. 선행연구에선 이 시기의 대로가 관등이나 관직이 아니었으므로 신라의 ‘대등’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중앙귀족의 범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현재로서는 대로가 관등이나 관직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 역시 부재한 만큼, 반드시 그렇게 비정할 수는 없다. 그런 한편 뒷날의 대대로를 고려하여 이때의 대로를 관등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⁹⁶⁾ 현재로서는 쉽게 단정할 형편이 못된다.⁹⁷⁾

대로의 성격이 좀 더 분명히 확인되는 사례는 7세기에 해당하는 “대로 고정의”의 경우이다. 이때의 대로는 명백히 관등은 아니다. 『주서』, 『구당서』, 『한원』 등 이 시기 고구려 관등제를 소개하고 있는 자료에서 대로를 관등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隋書』 高麗傳에서 대로를 6세기 고구려의 관등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대대로의 오기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7세기 대로의 실체는 관직이었을 가능성과 유력귀족의

95)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第9 寶臧王 4年. “時, 對盧高正義, 年老習事, 謂延壽曰, ‘秦王內芟羣雄, 外服戎狄, 獨立爲帝, 此命世之才. 今舉海內之衆而來, 不可敵也. 爲吾計者, 莫若頓兵不戰, 曠日持久, 分遣奇兵, 斷其糧道. 糧食既盡, 求戰不得, 欲歸無路, 乃可勝.’ 延壽不從.”

96) 임기환, 앞의 책, 2004, 230~233쪽; 여호규, 앞의 책, 2014, 402쪽.

97) 다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대로 제우와 함께 고구려의 장수로서 한성공격전에 참전한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은 본래 백제인이었는데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한 자들이었다고 한다(『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21年). 당시 재증걸루와 고이만년 역시 제우와 함께 ‘대로’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만일 이들까지 대로로 볼 수 있다면(노태돈, 앞의 책, 1999, 445쪽), 이 시기의 대로는 관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은 본래 백제에서 유력귀족이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점은 재증걸루가 한성 함락 이후 개로왕을 사로잡아 예를 취한 뒤 죽인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그들은 백제에서 유력귀족으로 활동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 고구려로 ‘정치적 망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구려에서는 유력한 망명객이자 향후 개시할 對백제 공격전의 이용물로서 가치가 있는 이들에게 관직보다 관등을 수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廣開土王代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덕흥리벽화고분의 墨書銘에 기록되어 있듯 고구려는 幽州刺史 鎮과 같은 중국계 망명인에게 자국의 관등을 수여한 바 있다.

칭호였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선 대로 고정이가 “年老習事”한 존재였다고 하였다. 이에서 “年老”라는 점에 주목해 그를 大對盧 임기를 마치고 정계의 元老로 활약하던 인물로 보는 견해도⁹⁸⁾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시해야 할 부분은 ‘경험이 많았다’는 뜻의 “習事”가 아닌가 한다. “연로” 역시 결국 “습사”에 포함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정이가 上官인 禰薩 고연수에게 작전계략을 건의하고 있고, 또 실제 그가 제시한 전술의 방향이 옳았던 사실로 볼 때 그는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단련되어 군사경험이 풍부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렇다면 그가 역임하고 있던 ‘대로’는 武官職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동행한 지휘관인 고연수·고혜진이 위두대형으로서 ‘육살’을 역임하고 있었던 만큼, 고정이가 역임한 ‘대로’ 역시 관등이 아니었다면 (무)관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⁹⁹⁾

이처럼 3세기 이후 대로의 변화상을 전하는 현전기록들은 공교롭게도 대로가 군사지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⁰⁰⁾ 비록 신라의 대등과 고구려의 대로 사이에 음운상의 유사성이 발견되더라도 자료상의 이런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전자료만으로는 대로를 중앙귀족의 범칭으로 해석하여 대로 회의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설사 대로가 중앙귀족의 범칭이었고, 대로회의가 존재했더라도 그것은 5세기의 상황이었을 뿐, 7세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상정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록상 7세기의 대로는 무관직의 성격에 가깝고, 이 시기 귀족회의의 존재

98) 이문기, 앞의 논문, 2000, 72쪽. 이러한 ‘대로 고정’의 모습은 장수왕대 한성공격 당시 보이는 대로의 활약상과 비교해볼 때 그 위상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임기환, 앞의 책, 2004, 231쪽)도 있다.

99) 7세기대의 대로를 관직으로 보는 견해는 임기환, 위의 책, 2004, 231쪽에서 제기된 바 있다. 아마 적어도 5세기 무렵까지 관등이었던 대로는, 그 이후 어느 시기가 대로에서 분화된 대대로가 최고위 관등으로 설정되면서 무관직으로서의 성격만 잔존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100) 여호규, 앞의 논문, 1995, 168쪽.

양태 역시 高麗記에서 전하듯 ‘오관회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5관을 통칭해 대로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경우 ‘대로 고정’이 상위 5관등 중 끝자락에 해당하는 위두대형을 보유한 고연수·고혜진에 비해 위상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7세기 고구려의 귀족회의체는 대대로 선임을 결정하던 ‘대인회의’와 주요 귀족들이 모여 정사를 의논하던 ‘오관회의’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대 귀족회의의 기능을 크게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과 귀족 간 정치적 역학을 조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당시 고구려에선 양자의 분리가 특징인 셈이었다.¹⁰¹⁾ 그렇다면 대인회의는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그 존재 의의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대인회의는 오관회의와 그 기능 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바, 오관회의는 상위 5관등 그룹의 귀족들이 기밀 관장, 병사 징발, 관작 수여 등 주요 ‘國事’를 의논하던 회의체로서 대대로가 議長이었던 반면, 대인회의는 몇몇 대인들이 협의하여 대대로를 선임, 연임하던 회의체였다. 대인회의에서는 대대로를 둘러싼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대인들이 私兵이나 자신과 사적으로 연결된 公兵을 동원해 무력투쟁을 벌였던 것으로 볼 때 그것은 각 귀족 가문의 세력기반과 역학관계가 전적으로 작용하던 회의체였다. 그런 만큼 대인회의는 의장이 존재하지 않은 채 구성원 전원의 합의 제로 운영되었을 수 있다. 또한 그런 탓에 국왕 역시 대인회의의 과정과 결정에는 공식적,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 같다.

101) 이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귀족 간 역학을 조율할 상위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국왕이 大人社會에 관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작용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6세기 중반 귀족세력 간의 극한적 권력투쟁과 그로 인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던 고구려 집권층이 귀족 간 역학에 따른 권력투쟁의 분출구를 제도 내로 흡수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파괴적 확장력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을 추구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즉, 국정운영을 귀족 간 역관계의 진전 양상으로부터 분리해냄으로써 국정운영에 미치는 그것의 파장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대대로는 국사를 총괄하는 ‘首相’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大人社會의 대표자’라는 위상 역시 함께 지닐 수 있었다. 아울러 대인회의에서는 대대로의 선임 및 연임뿐만 아니라 ‘대인’ 승습에 대한 추인 여부 역시 합의,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친의 ‘동(서)부대인’ 지위를 승계하려 했으나 다른 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각 대인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연개소문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¹⁰²⁾

물론 淵蓋蘇文 일가 및 高慈·高質·高欽德 등 귀족출신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에서 엿볼 수 있다시피 당시 귀족가문이 관등을 세습해나가는 것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만큼, 대인 승습에 대한 대인회의의 승인 기능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추인 절차에 불과했을 것이다. 연개소문이 대인을 ‘當嗣’해야 했다는 기록에서도 이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다만 연개소문의 경우 그의 집안의 위세를 경계한 국왕과 다른 대인들에 의해 그것을 추인받지 못하는 이례적 사태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 그럼에도 결국 연개소문이 부친의 대인을 승습한 사실은 연개소문이 직면한 사태가 예외적이었을 뿐, 대인회의에서의 대인 승습에 관한 추인이 형식적이고도 事後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재차 웅변해준다.

다만 다른 관등의 승습과 달리 대인의 승습이 대인회의에서의 형식적 추인이나마 거쳐야 했던 까닭은 역시 당시 관등체계와 귀족사회 내부에서 지니는 대인의 독보적 위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102)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有蓋蘇文者, … 父爲東部大人對盧死, 蓋蘇文當嗣, 國人惡之, 不得立, 頓首謝衆, 請攝職, 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嗣位. 殘凶不道, 諸大臣與建武, 議誅之…” 이와 관련해 『三國史記』卷49 列傳 第9 蓋蘇文의 찬자가 『구·신당서』 고려전의 “諸大臣與建武 議(欲)誅之”라는 구절을 “諸大人與王 密議欲誅”로 바꾸어 기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大臣”을 “大人”으로 換字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 찬자들이 『구·신당서』 고려전의 “대신”을 “대인”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삼국사기』 찬자들이 고구려 후기 ‘大人’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여 이 같은 기술을 한 것은 아닌 듯하다.

대대로는 그 자체 임기직으로서 세습직은 아니었으나 대인회의라는 장치에 의해 몇몇 소수 귀족가문의 독점물이 된 셈이다. 그리고 이 점이 국정운영을 위한 오관회의와 별개로 대인회의가 존재한 근본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증과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적인 결론을 정리해보자. 주지하다시피 고구려 후기 대대로는 제1위의 관등이자 국사를 총괄하는 首相직으로서 관등과 관직이 복합된 성격의 官이었다. 단, 종래의 이해와 달리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는 複數로 존재하였고, 그것을 7세기 중반 무렵부터 ‘관직으로서의 대대로’와 구별하기 위해 大人, 吐擗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이들 대인들이 도전해 취임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대인들의 합의체인 大人會議를 통해 선임 및 연임되었다. 이를 통해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대인사회의 대표자’라는 위상 역시 동시에 지닐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연태조는 죽기 전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대인, 토졸)와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를 모두 지냈으며 연개소문의 정변 이전 지위는 서(동)부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정변 이후 제2위의 관등이자 內朝를 이끌었던 中裏近侍職인 莫離支를 택한 것은 의도된 정치적 행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구려 후기의 귀족회의체는 크게 대인회의와 五官會議가 존재하였다. 전자가 유력 귀족(가문) 간의 정치적 역학을 조율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후자는 그야말로 상위 5관등을 보유한 귀족들이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결정을 논의하는 회의체였다. 이러한 귀족회의체의 이원적 운영은 귀족 간 권력투쟁의 분출구를 제도 내로 흡수함으로써 그것이 지닌 파괴적 영향력이 국정운영에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었다. 또한 국왕은 대인회의에 직접적,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이 시기 국왕이 귀족 간 역학을 자의대로 조정하는 상위 권력으로서 역할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귀족가문의父子 간 대인의 承襲은 비록 대인회의의 추인을 거쳐야 했으나 사실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淵蓋蘇文의 경우 대인 승습 과정에서 그의 가문의 독주를 견제했던 국왕 및 여타 대인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태였을 뿐, 실제 그는 결국 부친의 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만 이러한 대인회의의 존재를 통해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그 자체 세습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강대한 귀족가문 인사만이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대인회의는 특권적 장치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 글은 고구려 中期와 後期の 官制 및 귀족회의의 실상을 상호 비교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데 소홀하였다. 이 점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끝으로, 고구려 후기 정치사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선 보다 기초적인 규명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덧붙여 두고 싶다. 이 글이 그러한 논의의 활성화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원고투고일: 2015.4.3, 심사수정일: 2015.5.18,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대대로, 대인, 토졸, 대인회의, 연개소문

<ABSTRACT>

The Real Nature of the ‘daein(大人)’ and the
‘daedaero(大對盧)’ in late Goguryeo

Yoon, Sung-hwan

As we have seen, the daedaero(大對盧) in late Goguryeo was the highest position of an official rank and government office. However, unlike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the daedaero was multiple as official rank. It was told the daein(大人) or tojol(吐擗) to distinguish with a government office daedaero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Also, numerous daein's could take office in as government office daedaero. It was elected through the meeting of daein's(大人會議). The meeting of daein's was composed of the daein's, discussed the election and re-election of a daedaero. This conference, which is run by council system of all members, certified the daedaero as representatives of daein society. This fact indicates that Yeon Taejo(淵太祚), the father of Yeon Kaesomoon(淵蓋蘇文), was served as official rank the daedaero(=daein, tojol) and as government office daedaero. Yeon Kaesomoon inherited the daein from his father.

Nobilities' counsel system in late Goguryeo operated the meeting of daein's and the council of five offices(五官會議) as conference system. The meeting of daein's tuned political dynamics inter nobilities. While the council of five offices(五官會議) was to administrate state affairs, Dual operation of the conference system of nobilities was to prevent possibility that power struggle of nobilities spread over affairs of state. Also, king could not intervene the meeting of daein's. king do not carry out as higher power in that case. And the existence of the meeting of daein's make some

nobilities monopolizing the positions as government office daedaero. Therefore, the meeting of daein's was also in a sense privileged authority.

Key words : daedaero(大對盧), Daein(大人), Tojol(吐掙), the meeting of daein's(大人會議), Yeon Kaesomoon(淵蓋蘇文)

